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7.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 상호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별지 서식 변경

(안 제1조, 제5조, 제8조, 안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현행 : 「지진재해대책법」 → 개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현행 : 「건설기술관리법」 → 개정 : 「건설기술 진흥법」
- 현행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개정 : 「실내공기질 관리법」

나.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위험도 평가 실시의무 규정을 삭제

(안 제4조)

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 정비(안 제5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 례 안 : 붙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공시설물의 경우에는 구미시 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제5항제2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협도 평가단원 등록(말소) 신청서

회원번호		신 청 일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남 · 여		
소 속		직 급	
주 소 : (-)			전화 : ()
			FAX : ()
E-mail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터널 ☐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기타()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 항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주소, 전화번호(핸드폰) ○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위촉기간 까지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활동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본인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말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앞면>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명 :	사 진
소속 :	
주소 :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뒷면>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구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전화 : 000-000-0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위 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00-000-0000)		

210mm×297mm

■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사용제한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바람.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00-000-0000]	

210mm×297mm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00-000-0000)			

210mm×297mm

■ 구미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00-000-0000)

210mm×297mm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지진재 해대책법</u> 」 제21조에 따라 지진 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 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 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진 · 화산재해대책법</u> 」 제21조-----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	제2조(정의) ----- ----- <u>다음과</u>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위험도 평가 및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구미시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구 미시 본부장이 실시한다. <u>다만,</u> <u>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u> <u>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u> <u>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u> <u>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u> <u>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u> <u>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u>	제4조(위험도 평가 및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 ----- ----- <u>다만,</u> <u>공공시설물의 경우에는 구미시</u> <u>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u> <u>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u>

라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 ④ (생략)

⑤ 구미시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행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생략)

2.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3. 4. (생략)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반장과 반원 중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평가단원은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 구미시 본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되는 위험도 평가단원은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제8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현행과 같음)

2. 「건설기술 진흥법」-----

3. 4. (현행과 같음)

⑥ -----

-----.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⑦·⑧ (현행과 같음)

제8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미시 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② ----- ----- ----- -. ----- 「실내공기 질 관리법」 제3조제1항-----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	---

관계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도 또는 시·군·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소관 실·과		안전재난과
입 안 자	담 당 관	류 형 욱
	담 당	강 창 조
	담 당 자	김 한 수 (480-6743)